

(앞 쪽)

제 호
온천출입검사원증
(유효기간:)
사 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성 명
기 관 명

55mm×85mm [보존용지(1종)120g/m²]

(색상 : 하늘색)

(뒤 쪽)

온천출입검사원증
소속/직급: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온천법」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직인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 · 성분 · 유출량 및 이용 상황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